

20. 교원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8년 6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해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해외연수라 함은 개인적인 연찬을 위한 외국에서의 학술연구, 학위과정 이수, 각종 학회참석 및 학사제도 시찰 등을 말한다.

제3조(해외연수 구분) ① 해외연수는 연수기간에 따라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구분하고, 방학 중 또는 개학 중 60일 미만의 기간을 요하는 연수를 단기연수라 하고, 그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연수를 장기연수라 한다.

② 각종 학회참석 및 학사제도 시찰은 단기연수에만 적용한다.

③ 학위과정 이수 등 1년 이상 장기연수 시는 휴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연수

제4조(해외연수자의 자격과 회수제한) ① 본교의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

1. 단기연수는 본교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2. 장기연수는 본교에서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3. 2회 이상 해외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회의 연수이후 그 연수기간의 4배이상(단, 단기연수의 경우는 6배 이상)을 계속근무한 자
4.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해외연수에 지장이 없는 자
5. 해외연수가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우선순위 기준) 장기 해외연수 파견의 우선순위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10년 이상의 근속자로서 선임자순(단 한 번도 해외연수 사실이 없는 자)
- ② 박사학위취득자로서 한 번도 해외연수 사실이 없는 자
- ③ 5년 이상 근속자로서 연구능력이 우수하고 한 번도 해외연수사실이 없는 자

제6조(해외연수 원서제출과 승인) ①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장기연수는 출국 3개월 전, 단기연수는 출국 5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해외여행(연수) 승인신청서(소정양식)
2. 서약서(소정양식)
3. 연구계획서(또는 시찰계획서)

4. 직무대행서(소정양식)
5. 경비계산서
6.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사본
7. 발표한 논문 전문(해외학술행사 참가시)
8. 초청자 및 발표자의 이름이 등재된 프로그램 원본(해외학술행사 참가시)
9. 기타 총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교무처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자를 결정한 후 출국 30일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해외연수자의 출국신고) 해외연수자는 출국 전 총장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연수기간의 연장제한) 해외연수자는 필요에 따라 연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이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연수자는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연수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장기연수자는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연수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여비 및 학술활동 보조금) 해외연수시 여비 및 학술활동 보조금 지급은 다음에 따른다.

- ① 해외연수시 여비는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연수시에는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해외학술행사에서의 발표를 위한 해외연수시는 논문당 발표자1인에 한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최측 경비부담이나 타 기관에서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해외학술행사의 단순 참가를 위한 해외연수시는 총장의 결정에 따라 <별표>의 정해진 학술활동 보조금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수사항) 해외연수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본교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음.
- ② 지정된 연수지(시찰지)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연구를 수행함.
- ③ 연수기간중 수시로 총장에게 상황을 보고함.
- ④ 연수과정 이수 및 시찰을 마치는 즉시 귀국함.
- ⑤ 귀국 즉시 총장에게 귀국보고서(소정양식)를 제출함.
- ⑥ 연구목적으로 장기연수를 하는 자는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보고 논문을 작성 제출함.

제11조(복귀명령 및 소환조치) ① 총장은 연수기간 종료즉시 연수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해외연수기간중 이 규정에 위반할 때 또는 본교에서 필요할 때 총장은 연수자에게 소환을 명령할 수 있다.

③ 복귀명령 또는 소환명령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귀국하여야 이에 불응 할 때에는 면직한다.

제12조(해외연수기간중의 처우) ① 단기해외연수자에게는 연수기간동안 급여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1년 미만의 장기해외연수자에게는 연수기간동안 월급여액의 50%(상여금 제외)를 지급한다.

③ 학위과정 이수 등 1년 이상의 장기연수자에게는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격려금 지급) ① 해외연수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자비로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14조(근무의무) ① 해외연수자는 귀국후 연수기간의 3배수 기간동안 본교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전향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때에는 해외연수기간에 지급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교원해외(여행, 연수) 승인 신청서

제 호 20

수 신 : 총장

참 조 : 교무처장

제 목 : 교원 해외(여행,연수)신청서

다음과 같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여행목적			
여 행 지			
초 청 자			
여행기간	20 ~ 20		
경비부담			

첨부서류

1. 서약서
2. 연구계획서(또는 시찰계획서)
3. 직무대행서
4. 경비계산서
5.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사본
6. 발표한 논문 전문(해외학술행사 참가시)
7. 초청자 및 발표자의 이름이 등재된 프로그램 원본(해외학술행사 참가시)

20

신 청 자 : (인)

<별표>

지 역	지급액(US\$)
일본, 홍콩, 대만, 필리핀, 중국	400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800
미국 서부	800
미국 동부	1,000
호주, 뉴질랜드	1,000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소련(모스크바지역)	1,100
베네주엘라, 멕시코, 알제리,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1,300
나이지리아, 케냐, 모로코, 모잠비크	1,300

※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역은 별표상의 최근접 지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